

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제1심 민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,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
-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2조)
-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·결정·명

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
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
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함(안 제4조 신설)

4.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”을 “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제3호 중 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”을 “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고등법원의 심판범위)

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. 다만,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.

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
2.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

청사건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. 다만,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.

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

2.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578